

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·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제1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그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
 - 3)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,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)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 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4차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1호	등록취소			
나.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2호	등록취소			
다.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3호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라. 법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4호				
1) 다른 자에게 자기의		영업정지	등록취소		

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·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	6개월			
2)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설계·시공한 경우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3)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		
4)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·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